

#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5
------	-----

제출년월일 : 2005.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평창군의회 의결(2005.03.24)을 거쳐 공포(2005.04.13)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 강원도지사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음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제1항 및 제10조의2에서 정한 한시기구요건과 직급기준 위반
- 당초 조례개정취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환경보호과를 환경복지과로 명칭 변경(안 제3조제1항, 제2항)
- 나. 부칙에 규정한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각각 종전의 기구로 조정함.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관계법령 발췌서 참조)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바. 기타참고사항 : 강원도 시정요구 공문사본 별첨

##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환경보호과”를 “환경복지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사목 내지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산업경제 및 상공에 관련된 업무

아. 에너지 및 향토자원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제6호중 “환경보호과”를 “환경복지과”로 하고, 동호 마목 내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사회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업무

바. 여성 및 청소년 정책 업무

제3조제2항제9호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상하수도관련 업무

조례 제1768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복지과장”으로 한다.

②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복지과장”으로 한다.

③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3항중 “환경보호”를 “환경복지”로 한다.

④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복지과장”으로 한다.

⑤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중 “사회복지팀장”을 “환경복지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사회복지팀”을 “환경복지과”로 한다.

⑥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팀장”을 “환경복지과장”으로 한다.

⑦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3항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복지과장”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민원봉사과·자치행정과·재무과·문화관광과·<u>환경보호과</u>·산림과·건설과·지역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p> <p>②(생략)</p> <p>1. 기획감사실 가.~바.(생략)</p> <p><u>사.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련된 업무</u></p> <p>아.가스시설공사 및 관련 업무</p> <p>2.~5.(생략)</p> <p>6. <u>환경보호과</u> 가.~라.(생략)</p> <p><u>마. &lt;신설&gt;</u></p> <p><u>바. &lt;신설&gt;</u></p> <p>9. 지역도시과 가.~라.(생략)</p> <p><u>마. &lt;신설&gt;</u> 바.~아.(생략)</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 ----- -----<u>환경</u> <u>복지과</u>----- -----.</p> <p>②(현행과 같음)</p> <p>1.(현행과 같음) 가.~바.(현행과 같음)</p> <p><u>사. 산업경제 및 상공에 관련된 업무</u></p> <p>아. 에너지 및 향토자원 관련 업무</p> <p>2.~5.(현행과 같음)</p> <p>6. <u>환경복지과</u> 가.~라.(현행과 같음)</p> <p><u>마. 사회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업무</u></p> <p><u>바. 여성 및 청소년정책 업무</u></p> <p>9.(현행과 같음) 가.~라.(현행과 같음)</p> <p><u>마. 상하수도관련 업무</u> 바.~아.(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실장·국장·담당관·과장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4]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 2. “생략”

3.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0조의2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 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 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인구 3만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제22조(시정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영 및 이 영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 또는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일부터 3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 입법예고 관계 법령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창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4조(예고의 예외) 입법예고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정비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인 경우
4.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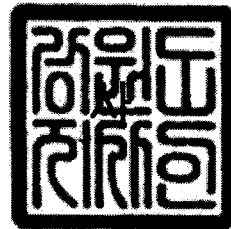
수신자 평창군수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 목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정요구

1. 지난 4.13일 공포한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평창군조례 제176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6조 제1항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였기 동조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불임과 같이 시정 요구하니 즉시 시정조치하고 조례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지



수신자

지방행정주사

이병승

지방행정사무관

이재명

총무과장

가희

자치행정국장

가희

전결 04/21

행정부지사

김민우

협조자

시행 총무과-5563

(2005.04.22.)

접수 자치행정과-3075

(2005.04.22.)

우 200-700 강원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강원도청 총무과 조직관리 / www.provin.gangwon.kr

전화 033-249-2265 전송

/ lbs3@provin.gangwon.kr

/ 비공개(5)

# 시정요구사항

자치법규명	관련조문시정		시정
	현행	행	
<p>평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768호</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 ①긴급히 발생하는 한시 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기구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경제팀</li> <li>2. 사회복지팀</li> <li>3. 상하수도팀</li> </ol> <p>②한시기구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 과 같다. (생략)</p>	<p>(현행과 같음) &lt;삭제&gt;</p>	<p>시정요구사유 및 조치사항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시기구는 요건충족(한시적 사무, 직급기준 적합)시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경제팀 · 사회복지팀 · 상하수도팀을 한시적 사무로 보기에 어려우며(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 위배)</li> <li>- 본청 과장급의 직급인 5급정원의 확보없이 한시기구를 설치하였으므로 설치요건이 결여한 기구임(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2 위배)</li> </ul> </li> <li>○ 그러므로 한시기구(산업경제팀 · 사회복지팀 · 상하수도팀)를 적법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5급 정원의 증원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함</li> <li>○ 또한 한시기구의 설치는 조례본문에서 규정하여야 하나 부칙에 규정된 것도 시정할 사항임(부칙에서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명시)</li> <li>○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고 그 결과를 조례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시기 바람</li> </ul>